##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93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이용선・박지원・이재관

황 희·고민정·김영호

염태영 · 권향엽 · 허성무

강준현 • 박해철 • 조계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지역균형발 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 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 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하도록 하고,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군용비용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및 제7항신설).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
	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
	행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
	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농산어촌만으 로 이루어진 지역

-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
-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생략)